

이돈출학술상 수상 규정

제정 : 2020년 5월 22일

제 1 장 상 설정의 목적

제 1 조 본 학회는 고 이돈출 교수(목포해양대)께서 기증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의해, 이돈출학술상을 제정하고, 소음진동공학의 학술 및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수상 자격

제 2 조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.

제 3 장 수상자 선정

제 3 조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에 이돈출학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, 심사위원은 매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4 조 심사위원회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에 수상 년도 전 2년 동안 게재한 논문 편수가 2편 이상인 교신 저자 중에서 학술 및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자를 선발한다.

제 5 조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
제 6 조 이돈출학술상 심사위원회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장 시 상

제 7 조 상의 시상은 매년 1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.

제 8 조 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한다.

제 9 조 수상자가 시상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

- 부 칙
1.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상의 세칙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2. 본 규정은 2020년 5월 22일 제정일로 부터 시행한다.

이돈출학술상 심사위원회 규칙

제정 : 2020년 5월 22일

제 1 조 본 규정은 이돈출학술상 수상 규정(이하 상 규정이라 한다) 제 3조에 따라 설치되는 이돈출학술상 심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위원회의 구성은 부회장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이사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며, 매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3 조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 4 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이돈출학술상 운영 세칙

제정 : 2020년 6월 26일

제 1 조 본 세칙은 이돈출학술상 수상 규정(이하 상 규정이라 한다) 제 1조에 의해 규정된 상의 설정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금 운영 및 수상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본 학술상의 운영은 설정 목적과 기증 취지에 따라 기증된 기금(1억원)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가 존속하는 한 원금은 보존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율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율이 부족한 경우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. 또한, 기금은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.

① 상패, ② 상금(부상), ③ 운영경비(회의비)

제 3 조 상 규정 제 7조에 의거 상패와 상금(부상 100만원)으로 매년 1명을 선발하여 수여한다.

제 4 조 본 학술상의 수상자는 상 설정 목적에 따라 재차 수상은 불가하다.

제 5 조 본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